

판 결

사 건

보증금반환

건물인도

원고(반소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유

담당변호사 조효동

피고(반소원고)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주 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반소피고)에게 1,769만 원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로부터 제1항 기재 금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고(반소원고)에게 제1항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3.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5. 제1, 2항은 각 가집행할 수 있다.